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40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김한규・장철민・신정훈
문대림・임호선・진선미
박상혁・박민규・전진숙
이용우・이원택・임미애
박정현・서미화・김태년
최혁진・박주민・위성곤
이주희・문정복・양부남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청소년증”을 “청소년증(모바일 청소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을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과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청소년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의 발급, 회수 및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을 회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한 자

제45조제3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② (생략)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 ---------- ---------- ---------- 청소년증(모바일 청소년증을 포함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청소년증) ① (생 략)	제4조(청소년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과 제2

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이라 한다)은----------.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증----------.
<신 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누구든지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증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을 회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의 발급, 회수 및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생 략)	1. 제4조제3항---------- 2. 제4조제4항---------- ④ (현행과 같음)